

부산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332407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8. 5. 29.

판결 선고2018. 6. 1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0. 15.까지는 연 6%, 2017. 10. 16.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9%,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경남 밀양시 C답 5399m²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17. 2.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2. 20. 접수 제51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A는,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과 사이에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른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13.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액 1억 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 보험기간 2015. 7. 14.부터 2018. 7. 13.까지로 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는데, 2017. 4. 28. 외상물품대금 341,650원 및 지체상금 658,350원을 입금한 이후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미수금이 2017. 5. 7. 기준으로 120,445,500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A는 2017. 5. 8.경 위 미수금에 대하여 2017. 5. 30.까지 미수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변제촉구를 받았음에도 2017. 5. 31. 외상물품대금 8,968,420원만을 이행한 채 나머지 외상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이 피고 A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017. 8. 23.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2017. 9. 15.경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는 2011. 5. 6.경 소유권을 취득한 경남 밀양시 C답 539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20.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 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2017.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11. 7.까지1)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인 2017. 2. 20.경에는 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으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는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으로부터 외상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2016. 8. 1.경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체납이 있었고, 2016. 9. 9.경 이미 외상대금이 보험금액인 1억 원을 초과(182,296,240원)한 이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시에도 미지급 물품대금이 150,728,940원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 A의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초과상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7. 2. 20.을 기준으로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7. 2. 20.경에는 피고 A가 시가 43억 원 상당의 냉동고등어 등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냉동고등어 등도 피고 A의 무자력 판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릇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E에 대한 외상물품공급에 대한 보험계약인 이상 주식회사 D의 자력을 고려할 수도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는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은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부산에서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F에게 냉동고등어 구매대금으로 6억 원을 대여한 바가 있고, F은 수산물공판장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피고 A에게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A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624,027,436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한 채권을 F로부터 양수받은 후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피고 A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A와는 별개로 피고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 위와 같이

마.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2017. 2. 2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헌기

1) 원고는 2017. 10. 16.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2017. 11. 7.경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11. 7.까지만 연 9%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한다.